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조항

2024.6.5. | 최광희고문



법무법인(유)세종 최 광희 고문 khchoi@shinkim.com



고문

Shin & Kim · 정규직 2024년 5월 - 현재 · 1개월 대면근무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중점수사 자문위원

동부지검 · 시간제 2023년 6월 - 현재 · 1년



겸임교수

고려대학교(세종) · 시간제 2023년 3월 - 현재 · 1년 3개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

대한민국 국방부·시간제 2023년 3월 - 현재·1년 3개월



부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 · 시간제 2021년 1월 - 현재 · 3년 5개월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2년 5개월

사이버침해사고대응본부장
 정규직
 2002년 1월 - 현재 · 22년 5개월
 대면근무

● **디지털보안산업본부장** 정규직 2021년 1월 - 2023년 1월 · 2년 1개월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

■ 미래정책연구실장≥020년 1월 - 2021년 1월 · 1년 1개월

2020년 1월 - 2021년 1월 : 1년 1개월

개인정보보호정책단장
 2019년 1월 - 2020년 1월 · 1년 1개월



LG U+ 침해사고 특별조사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즌 2023년 1월 - 2023년 4월 · 4개월



행정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2017년 7월 - 2019년 1월 · 1년 7개월 사이버안보비서관실



Visiting Scholar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14년 1월 - 2015년 2월 · 1년 2개월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 및 방향





I.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과 방향

오피니언 > 동아광장 '개망신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동아광장/ 최재경]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0-01-14 03:00

'가명정보' 활용 높인 '데이터 3법', 의료-금융 등 이용 가능성 무한 규제 '대못' 제거... 기업들 환영 7월부터 IT 관련 분야 빅뱅 예상 '개인정보 돈벌이 수단' 악용 없게 정보 보호 및 침해 처벌 강화 뒤따라야

I.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과 방향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일원화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이동형 기기의 영상정보 운영기준 마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 신설로 全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全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로 신기술·신산업 지원 분쟁조정 제도개선, 사적 목적 이용 금지 등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 마련

인공지능(AI) 기술 가속화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및 처리방침 평가제로 실질적 선택권 강화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축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혁신과 국민의 적극적 권리강화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호·예방의 실효성 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이전 중지명령권 신설을 통한 안전조치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데이터 기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실현

I.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과 방향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 공포)에 따라 시행시기에 맞춰 1차('23.9.15.) 및 2차('24.3.15.) 후속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 완료

1차 시행

- 정보통신서비스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 동의 받는 방법 및 추가적인 이용제공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전성 확보조치
-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
- 과징금 부과기준, 공표명령 등

2차 시행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자격요건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 손해배상의 보장 대상 범위 및 기준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 배경

- ◆ 기존 법은 고정형 영상기기(CCTV)만을 규율,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서는 미흡
 - ✓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필요

✓ 개정내용

- ◆ 공개된 장소 등에서 <mark>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mark>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안내방송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



- 2 온 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 ✔ 배경
 - ◆ 데이터 3법 개정 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규정을 특례(제6장)로 단순 이전·병합
 - ✓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규제(일반 규정)와 온라인 규제(특례 규정)의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 부담이 발생

✓ 개정내용

- ◆ 특례 규정을 일반 규정과 일원화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 적용
 - ✓ 유사·중복되는 특례 규정*은 일반 규정으로 통합
 - ✓ 특례 규정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 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개인정보 이용 내역통지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확대 적용



2 온 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핵심1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제도 정비

- ◆ '수집 출처 통지 제도'와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량 기준으로 일원화(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 ✓ 수집 출처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함께 통지

핵심 2 안전성 확보 조치 중복 규정 일원화(영 제48조의2 삭제 → 영 제30조 통합)

- ◆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
 - ✓ 특정 기술에 한정된 침입탐지시스템, 비밀번호, 보안서버, 백신소프트웨어 등 문구 수정·삭제
 - ✓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전송·저장 시 암호화 기술 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 허용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념 및 정의를 정비
 - ✓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으로 변경

2 온 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핵심3

유출 통지 및 신고 중복 규정 일원화 (영 제48조의4 삭제 → 영 제39조~제40조 통합)

-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위(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 유출 통지의 경우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 ◆ 신고 시 개인정보 유형, 유출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 ✓ 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유출,②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
 - ③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해킹)에 의해 1건 이상 유출 신고 대상으로 규정
 - ✓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는 유출 규모와 관계없이 통지의무 이행



1건의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연락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해야 하나요?



- 3 동의 제도 개선
- ✔ 배경
 - ◆ 사전동의 제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형식적 동의 및 '동의 만능주의' 관행 지속
- ✓ 개정내용
 - ◆ 동의 이외의 개인정보 적법 처리요건 활성화(제15조제4호 '불가피하게' 삭제)
 - ✓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 수집·이용 활성화
 - ◆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동의 원칙을 구체화
 - ✓ ①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②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③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④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시행일: 2024. 9. 15.)



4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배경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정 고지 사항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판단기준 미비 등 실체적 통제 미흡

✓ 개정내용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 처리방침 작성지침 준수 여부,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
 - ✓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규모, 처리 근거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 할 수 있도록 규정 (령 제31조의2 신설)



5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

✔ 배경

◆ 조정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하며, 분쟁조정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 조정에 한계

✓ 개정내용

- ◆ 분쟁조정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 ◆ 분쟁조정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입 및 자료조사 등 사실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
- ◆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거부'로 간주하던 것에서 '수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준 전환



6 형벌 중심에서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 배경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형벌규정을 일반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과도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 개정내용

- ◆ 과징금 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
 - ✓ 다만,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도록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

핵심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 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③ 유출 등의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규모
- ⑤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 ②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 ④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7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법제37조의2)
- ✔ 배경
 -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인사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
- ✓ 개정내용
 - ◆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권, 설명 등 요구권 부여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 배제,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조치 의무를 규정



7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법제37조의2)

핵심1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의무(영 제44조의3 신설)

- ◆ (자동화된 결정 거부 시)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정보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함
- ◆ (설명 요구 시) ①해당 결정의 결과, ②해당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영향 등을 포함하여,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

개별 설명 시 포함해야 할 사형 (영 §44의3②)

- ▶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
- ▶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 ▶ 개인정보의 유형이 자동화된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자동화된 결정의 주요 기준**
- ▶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 ◆ (요구의 거절)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가능(거절하는 경우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림)



-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법제31조)
- ✔ 배경
 - ◆ CPO의 자격과 관련 그간 직위요건(예: 임원)만 규정하고 있고 전문성 및 독립성 요건은 미비하여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서 실질적 역할수행에 한계
- ✓ 개정내용
 -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CPO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여

핵심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지정 및 자격요건(영 제32조 개정, 별표1 신설)

- ◆ 일정 기준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일정 경력(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CPO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 ▶ 자격요건: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
 (개인정보보호 경력 최소 2년 이상 필수)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법제31조)

핵심2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

자격요건을 갖춘 CPO 지정 의무대상

- ① 연간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원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② 전년도 말 기준 재학생(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 수가 2만명 이상인 대학
- ③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 ④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 시행령 시행(2024.3.15.) 당시 지정되어 있는 CPO에 대하여는 2년 이내(2026.3.14.)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www.shinkim.com

T 02 316 4114

F 02 756 6226

본자료에 대한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세종 및 작성 자에게 속하므로,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